

H W A S E O N G D O N G T A N 2 A 4 - 2 B L



**주 소** LH화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스타프라자 4층(반송동 92-7)

**오시는 길** 서동탄역 하차 후 701-1, 709-1(배차간격 1시간)

**지 하 철**: 병점역 1번 출구, 병점역사거리 정류장(701 또는 마을  
버스 17)이용, '롯데캐슬, 복합문화센터' 하차 후 도보로 5분

**버 스**: 메타폴리스(중)/복합문화센터 하차 후 도보 10분

- 일반버스 : 1, 5-1, 7-1, 13-5, 44, 45, 50, 62-1, 63, 63-1,  
64, 70-2, 92-1, 98, 99, 116-1, 303, 311, 701,  
701-1, 707, 708, 709-1, 1116

- 좌석버스 : 1000, 1550-2, 1550-3, 1553, 1560-1, M4108,  
M4403, 8311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 세대유니트(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전화 **1600-1004**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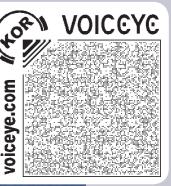


생활은  
**감동**  
미래는  
**란탄**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SRT 동탄역 사이에 자리한 화성동탄2 A4-2블록은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생활은 감동이 되고 미래는 탄탄대로가 되는 도시입니다.



D N G  
T A N 2.

## Contents

- |              |                  |                 |                    |                  |
|--------------|------------------|-----------------|--------------------|------------------|
| 02 Contents  | 04 이미지투시도        | 06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 08 지구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 10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 |
| 12 Unit Plan | 20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 24 기타 편의시설      | 26 주요마감재시설내역       | 27 입주자모집 공고문     |



기흥IC와 동탄역 사이에서 만나는 새로운 감동!  
동탄2신도시 A4-2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생활은 감동이 되고  
미래는 탄탄한  
살기 좋은 집입니다!**

H W A S E O N G   D O N G T A N 2   A 4 - 2 B L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 상기 이미지 투시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est Location

지역조감도/교통망도



## 교통의 중심, 탄탄한 미래를 약속하다!

동탄2신도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신도시로 신도시 내 백화점(예정)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SRT · GTX ·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탄탄한 미래가 열립니다.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의 속도를 높이는 SRT와 GTX

수서역까지 15분대 접근하는 SRT와 삼성역, 서울역은 물론 파주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공사중)



### 생활의 폭을 넓히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예정 등 서울과 전국을 탄탄대로 이어주는 광역교통망



### 생활의 밀도를 높이는 간선도로망

영덕-오산간고속도로(지방도 311호선), 국지도 84호선(예정) 등 세밀한 지역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인접지역 이동 편리성 확보



Best Site

지구조감도 / 토지이용계획도



## 생활의 중심, 생활에 감동을 플러스하다!

백화점 등 상업시설은 물론 문화와 여가 시설이 집중되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선납숲공원이 곁에 있어 일상이 감동이 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광역학습시설	공공지	위험물처리시설
연립주택	지원시설용지	광장	전기공급시설
아파트	공공업무시설	하천, 저수지	전기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	유통업무설비	체육시설	수도, 가스, 수도용지
업무복합용지	유, 조, 종, 고	의료시설	오수펌프장
문화복합용지	학교	의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상업시설용지	공원	의복	저류지
주상복합용지	완충녹지	종교시설	도로
업무시설용지	경관녹지	커뮤니티센터	저류지
	연결녹지	사회복지시설	광영, 공영차고지
			주차장
			철도시설



Dream landscape

단지조감도 / 조경배치도



주 소 만  
들 어 도  
힐링되는 집



## 힐링의 중심,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다!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며 다양한 커뮤니티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 총 1,390세대

영구임대 359세대 [금회공급]	22A	22B	27A	27B	27B-1
	40세대	74세대	93세대	80세대	72세대 [주거약자]
국민임대 1,031세대 [별도공급]	28A	28B	37A	37B	37B-1
	157세대	204세대	98세대	20세대	48세대 [주거약자]
	38C	46A	46B	47C	47D
	210세대	54세대	50세대	108세대	82세대

\* 상기 단지조감도 및 조경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230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230동, 231동, 235동 23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관련기관(KT, SKT, LGU+) 협의 후 전파강도측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Unit Plan

단위세대

## 22A

22A 40세대

###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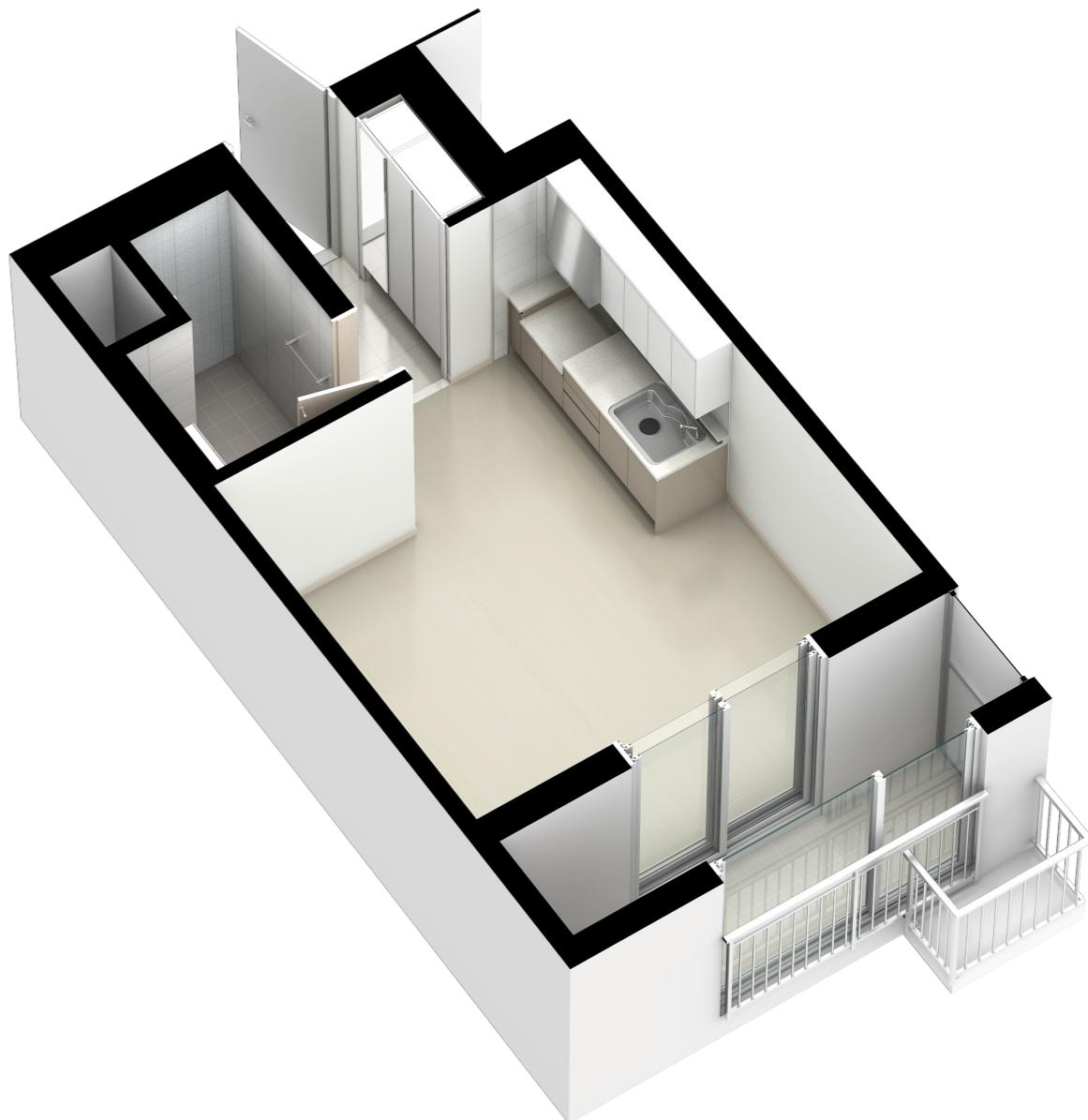
전 용 면 적	22.1800m <sup>2</sup>
주거공용면적	13.1903m <sup>2</sup>
기타공용면적	2.4383m <sup>2</sup>
지 하 주 차 장	16.1227m <sup>2</sup>
<b>계 약 면 적</b>	<b>53.9313m<sup>2</sup></b>

###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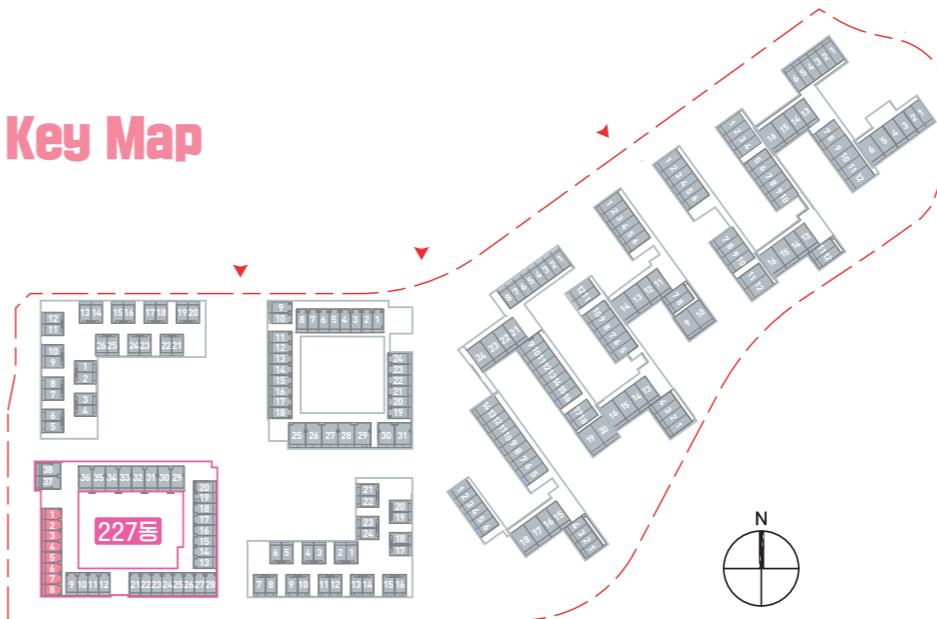
거 실 / 식 당	16.93m <sup>2</sup>
욕 실	3.10m <sup>2</sup>
현 관	1.96m <sup>2</sup>
초 과 발 코 니	0.19m <sup>2</sup>
<b>합 계</b>	<b>22.18m<sup>2</sup></b>

### 서비스면적

발 코 니	6.30m <sup>2</sup>
-------	--------------------



## Key Map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차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sup>2</sup> ×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기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Unit Plan 단위세대

# 22B

22B 74세대

### 주택면적

전용면적	22.1400m <sup>2</sup>
주거공용면적	13.1665m <sup>2</sup>
기타공용면적	2.4339m <sup>2</sup>
지하주차장	16.0936m <sup>2</sup>
<b>계약면적</b>	<b>53.8340m<sup>2</sup></b>

### 전용면적

거실 / 침실	8.64m <sup>2</sup>
주방	7.64m <sup>2</sup>
욕실	3.14m <sup>2</sup>
현관	1.94m <sup>2</sup>
초과발코니	0.78m <sup>2</sup>
<b>합계</b>	<b>22.14m<sup>2</sup></b>

### 서비스면적

발코니	5.40m <sup>2</sup>
-----	--------------------

1050 | 680 | 1870

700 |

2515 |

3885 |

1500 |

1500 |

3600 |

1500 |

1500 |

7100 |

71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 Unit Plan

단위세대

# 27A

27A 93세대

###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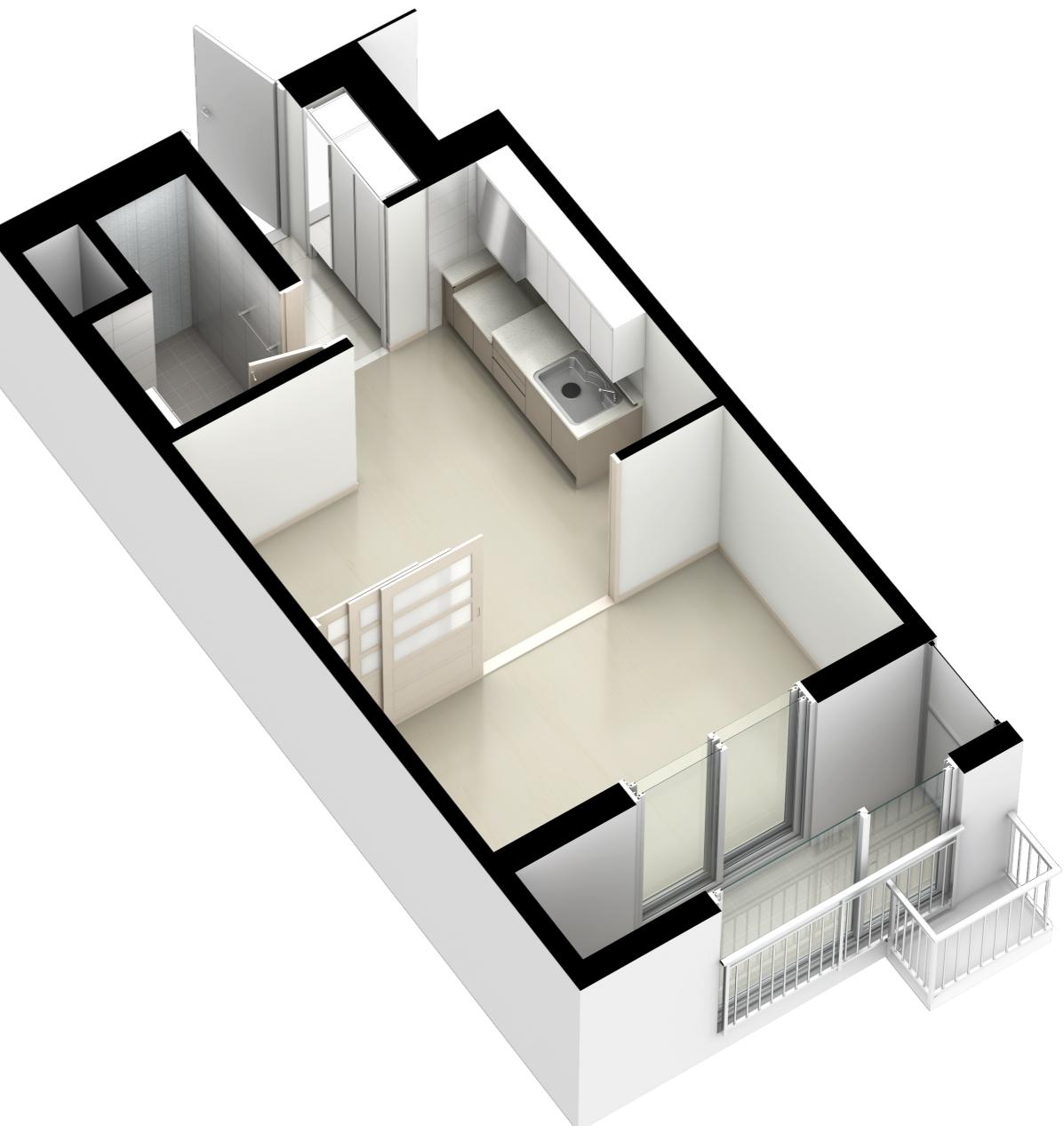
전 용 면 적	27.0600m <sup>2</sup>
주거공용면적	16.0924m <sup>2</sup>
기타공용면적	2.9748m <sup>2</sup>
지 하 주 차 장	19.6700m <sup>2</sup>
<b>계 약 면 적</b>	<b>65.7972m<sup>2</sup></b>

###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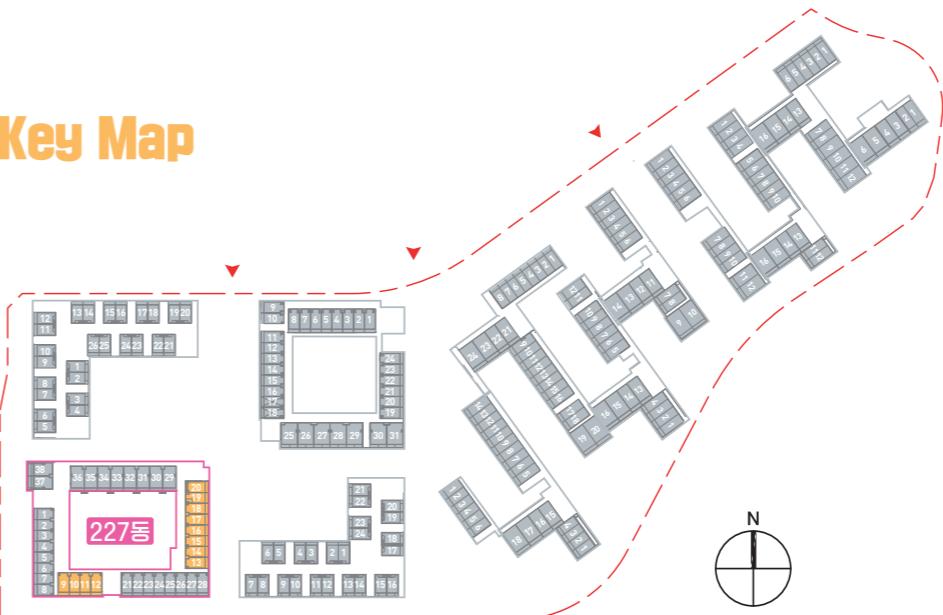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0.64m <sup>2</sup>
주방	11.17m <sup>2</sup>
욕실	3.10m <sup>2</sup>
현관	1.96m <sup>2</sup>
초과발코니	0.19m <sup>2</sup>
<b>합 계</b>	<b>27.06m<sup>2</sup></b>

### 서비스면적

발코니	6.30m <sup>2</sup>
-----	--------------------



## Key Map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차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sup>2</sup> ×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기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션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Unit Plan 단위세대

# 27B, B-1

27B 80세대

27B-1 [주거약자] 72세대

###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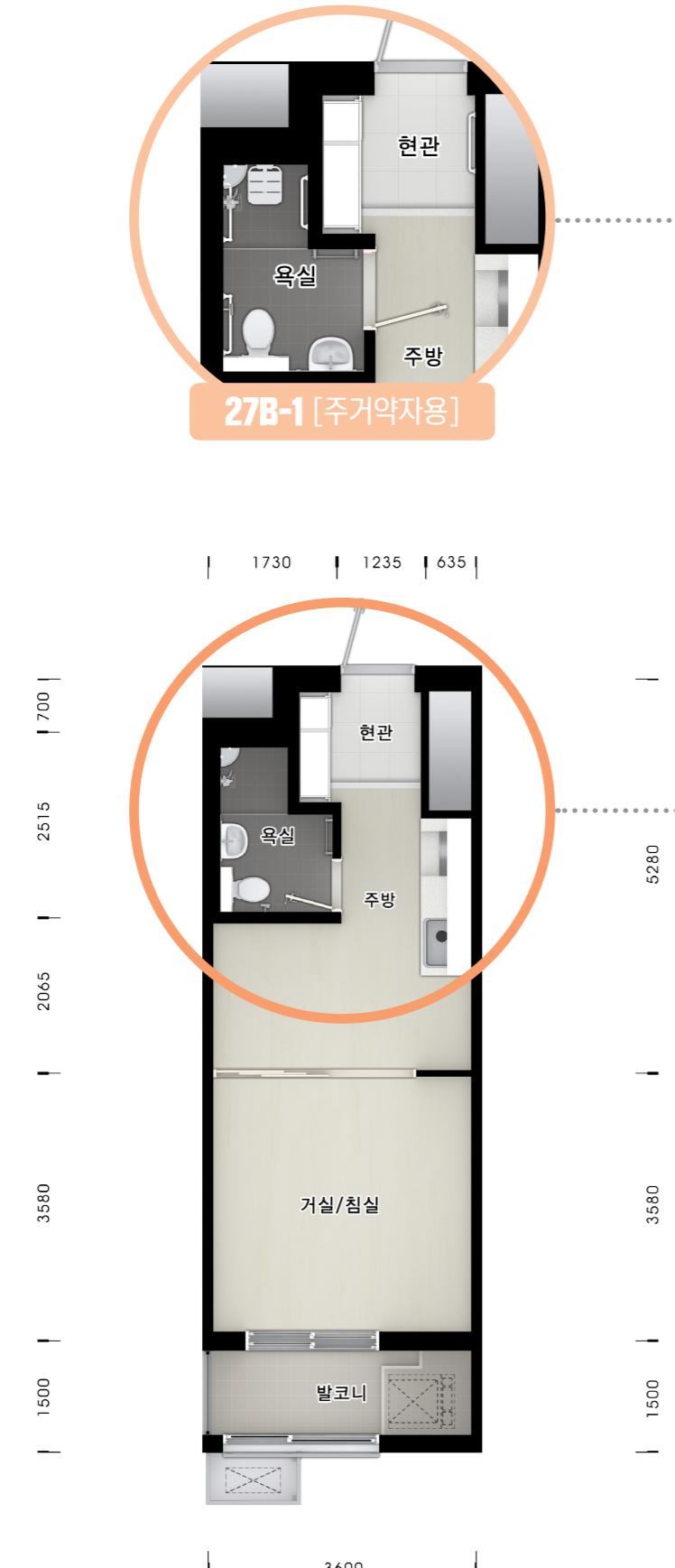
전용면적	27.7000m <sup>2</sup>
주거공용면적	16.4731m <sup>2</sup>
기타공용면적	3.0451m <sup>2</sup>
지하주차장	20.1352m <sup>2</sup>
계약면적	<b>67.3534m<sup>2</sup></b>

### 전용면적

거실 / 침실	11.70m <sup>2</sup>
주방	10.14m <sup>2</sup>
욕실	3.14m <sup>2</sup>
현관	1.94m <sup>2</sup>
초과발코니	0.78m <sup>2</sup>
합계	<b>27.70m<sup>2</sup></b>

### 서비스면적

발코니	5.40m <sup>2</sup>
-----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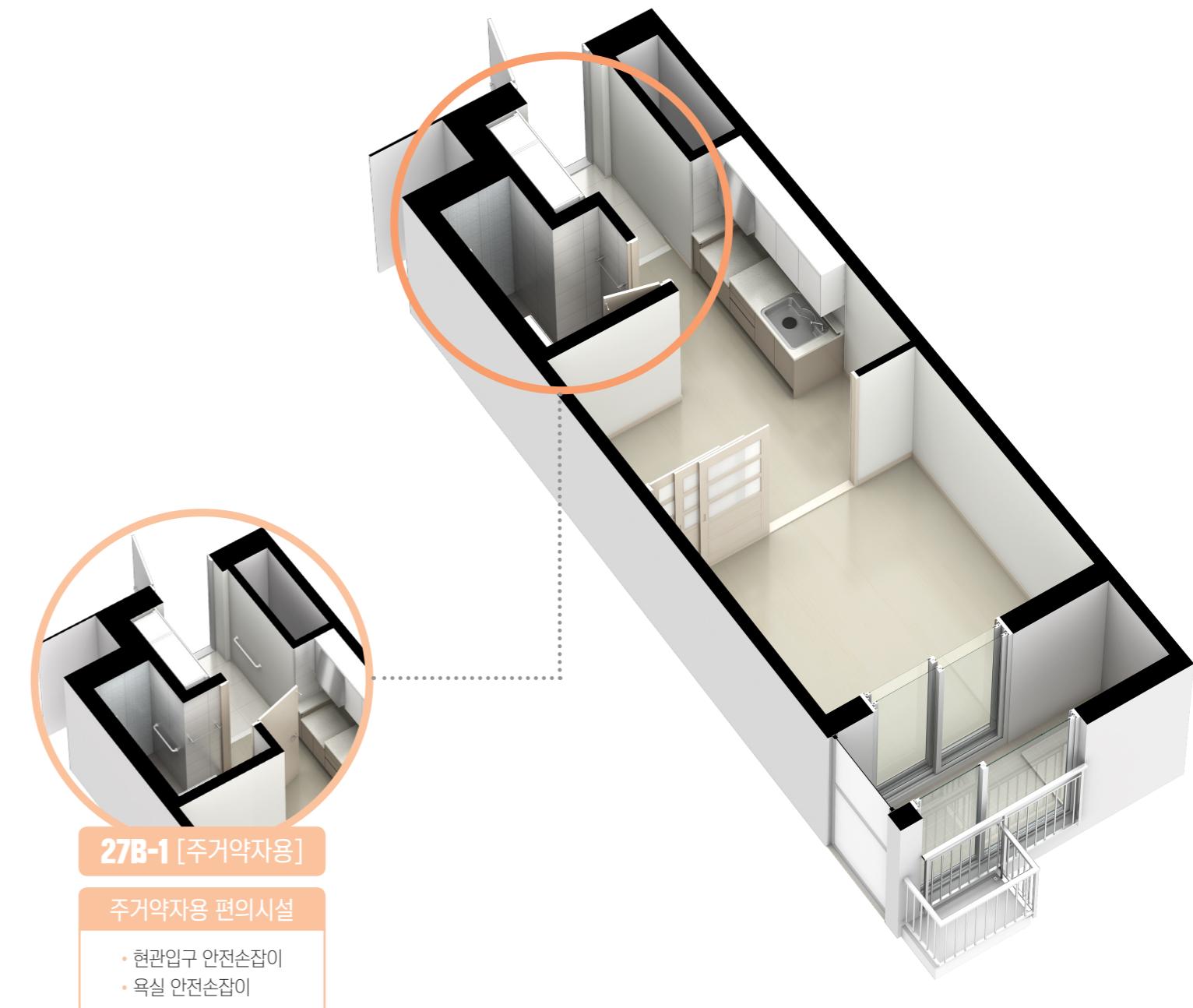
\* 평면도의 배차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sup>2</sup> × 0.302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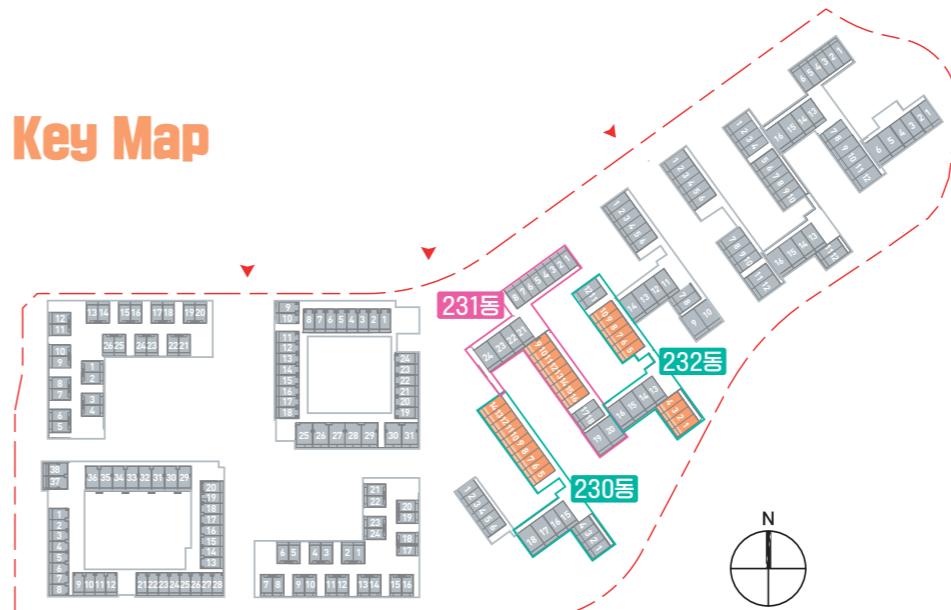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기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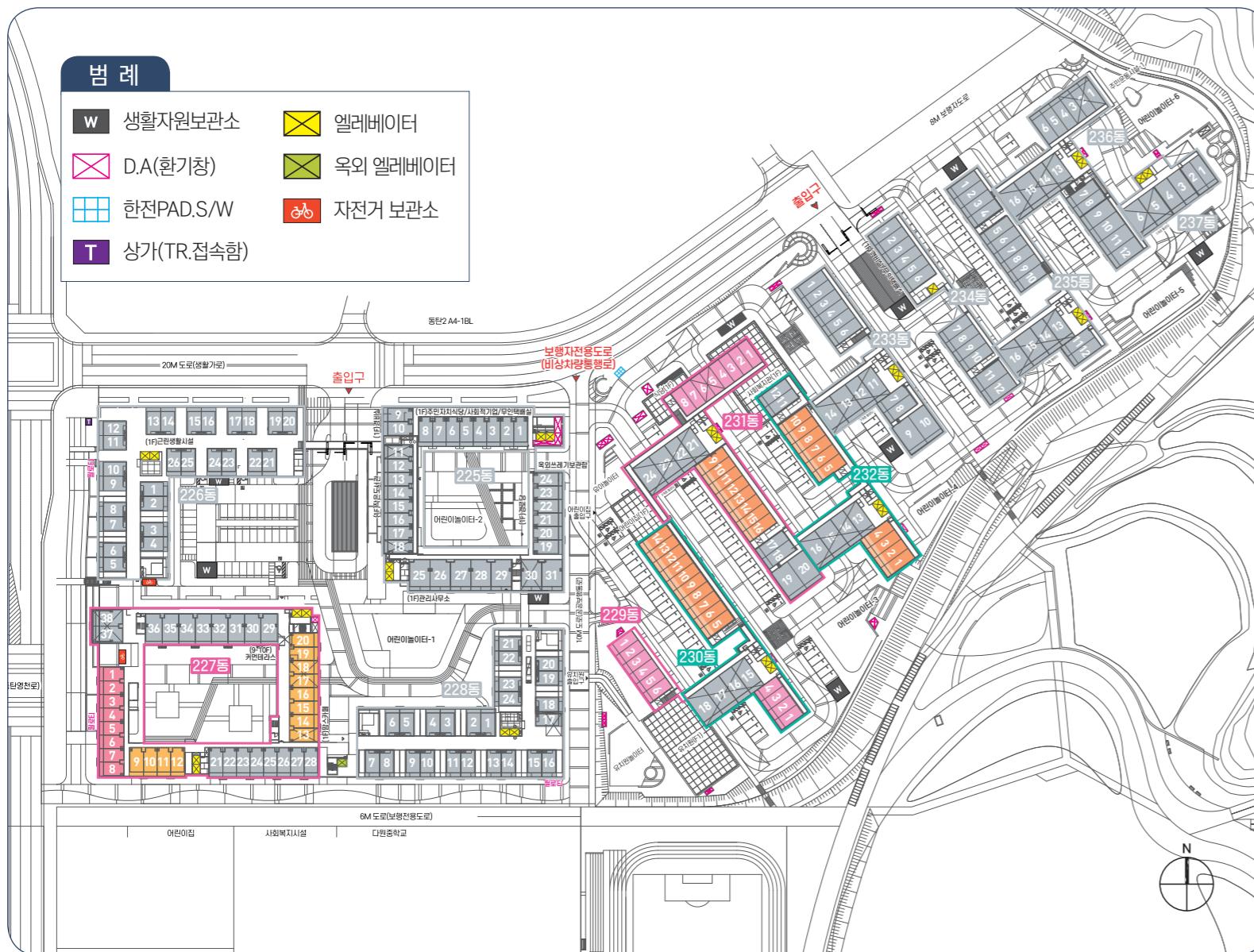
## Key Map





## Pla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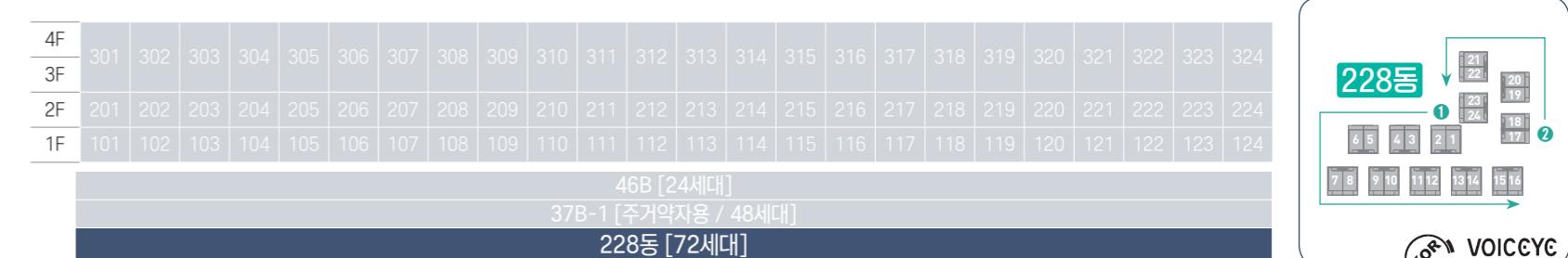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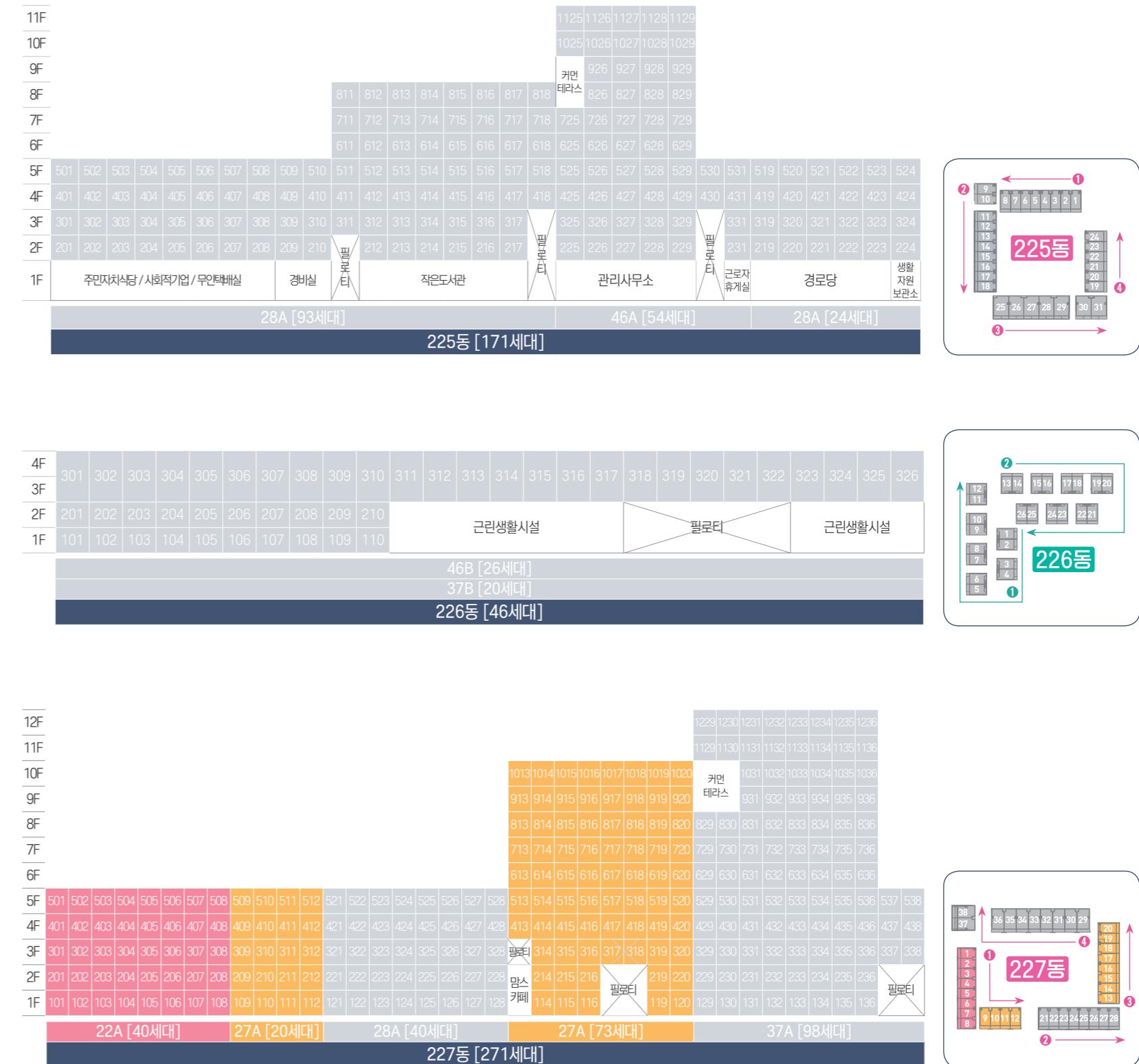
##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 상기 단지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 총 1,39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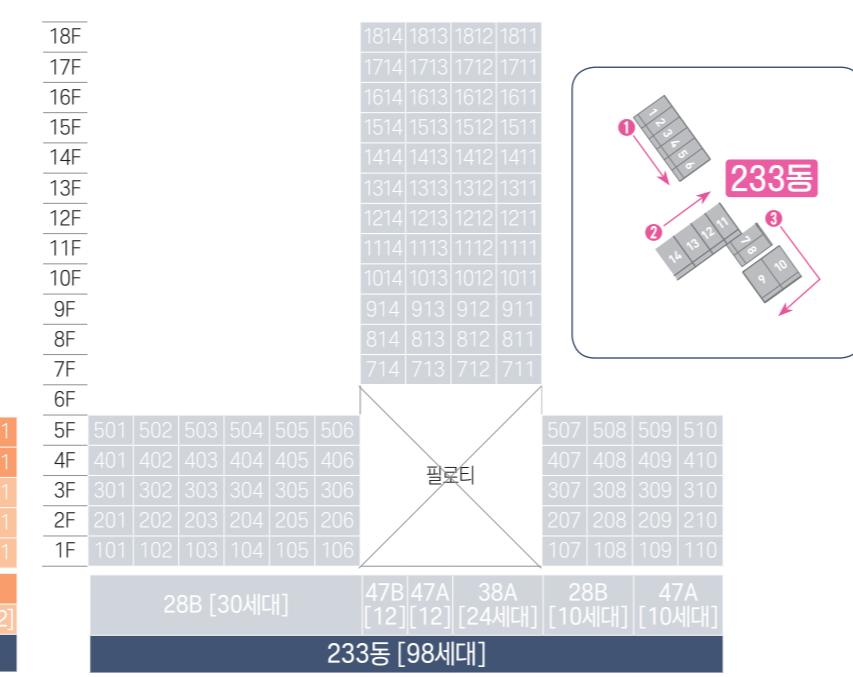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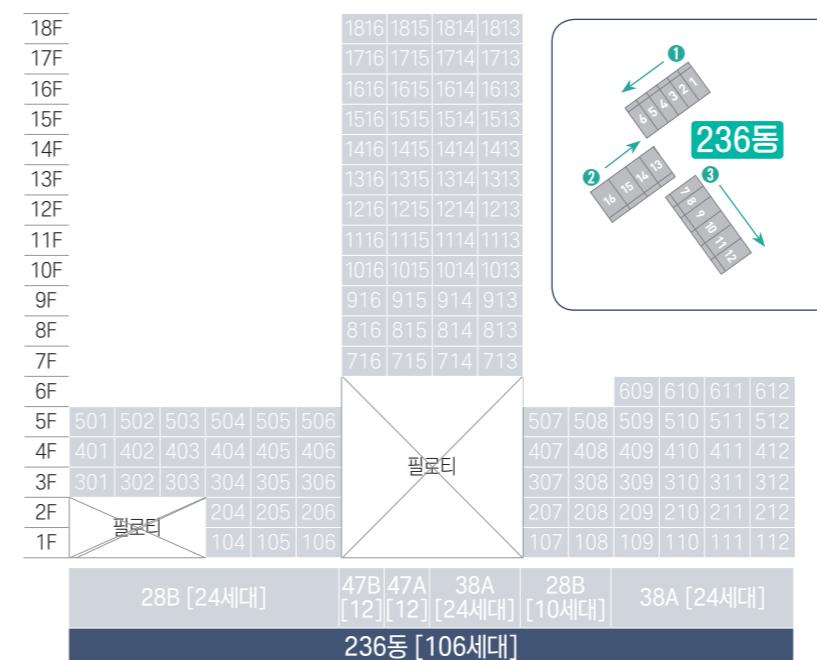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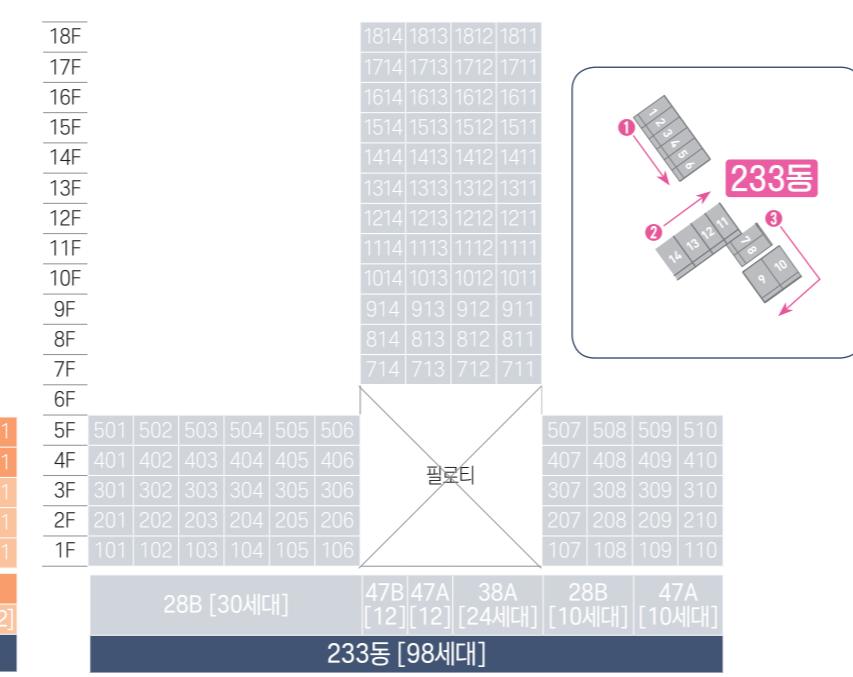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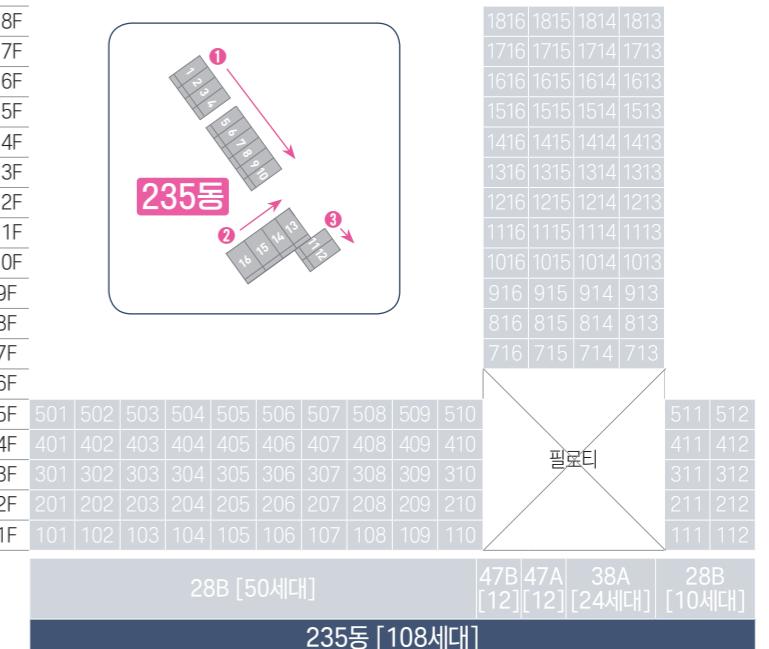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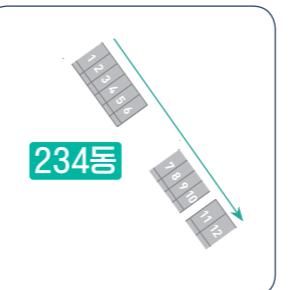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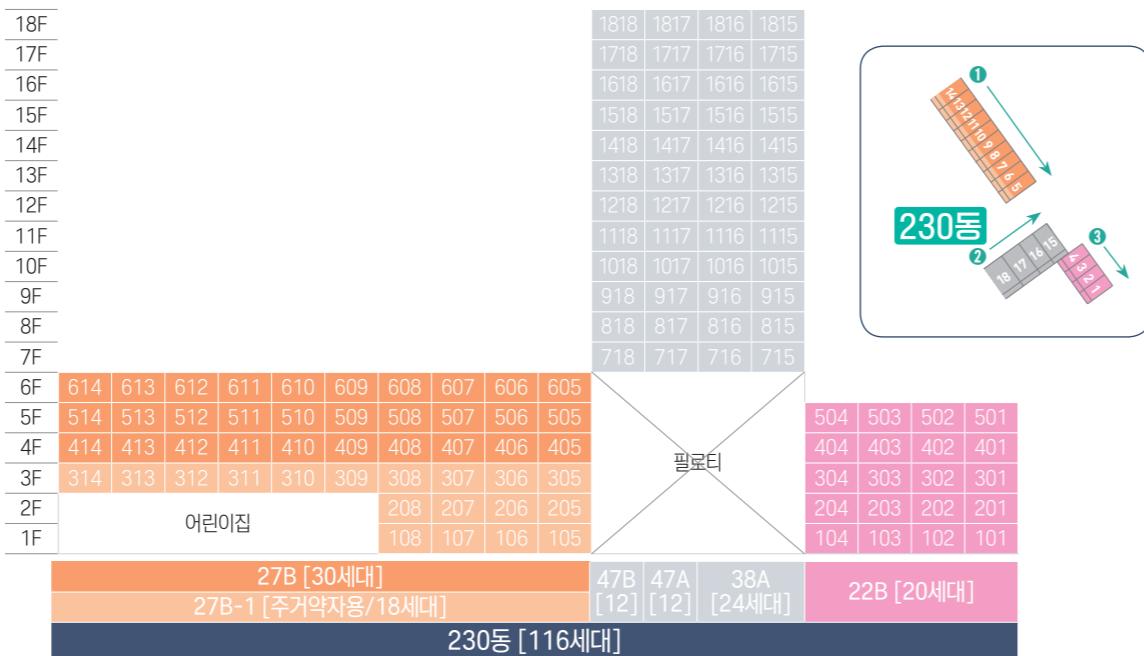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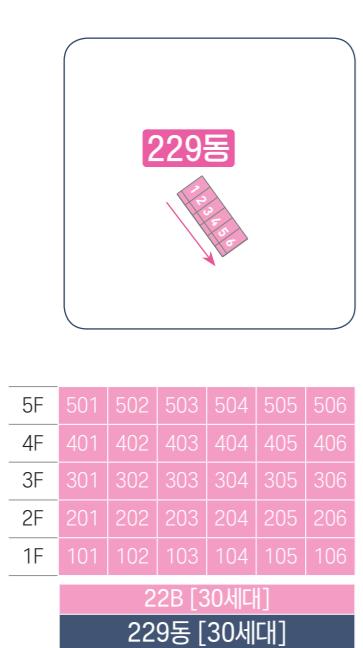
영구임대 359세대 [금회공급]	22A	22B	27A	27B	27B-1
	40세대	74세대	93세대	80세대	72세대 [주거약자]
국민임대 1,031세대 [별도공급]	28A	28B	37A	37B	37B-1
	157세대	204세대	98세대	20세대	48세대 [주거약자]
	38A	46A	46B	47A	47B
	210세대	54세대	50세대	108세대	82세대





## Plan Map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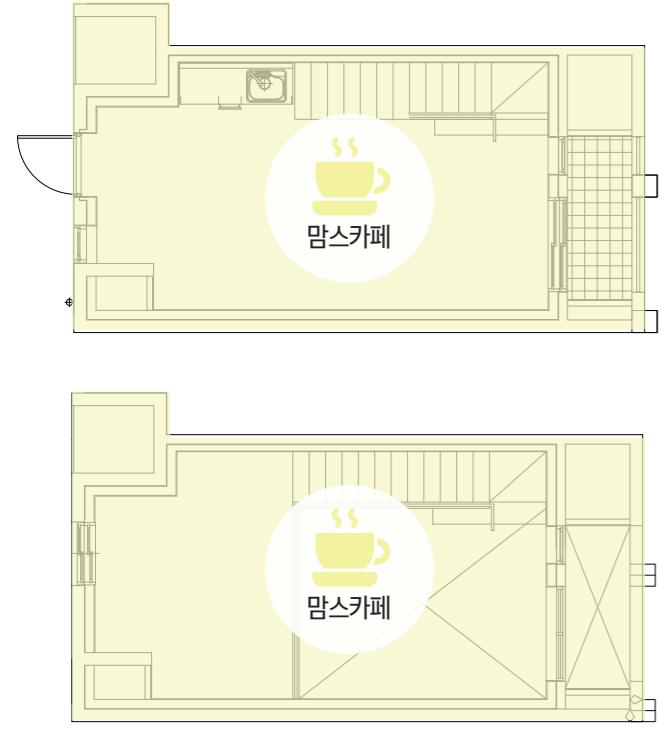
## Amenities

## 기타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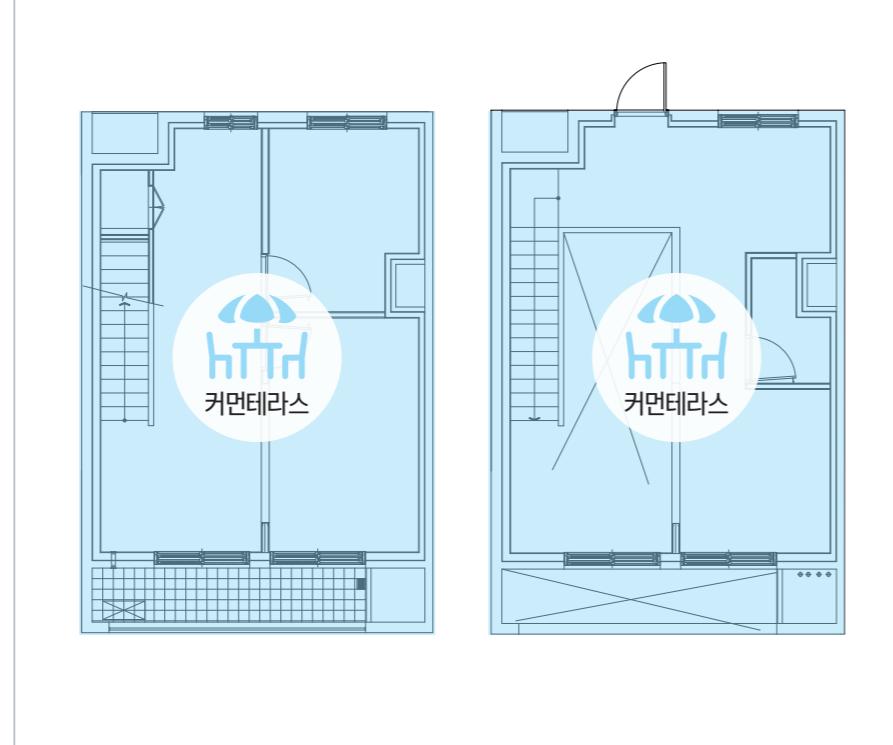
주민공동시설#1



주민공동시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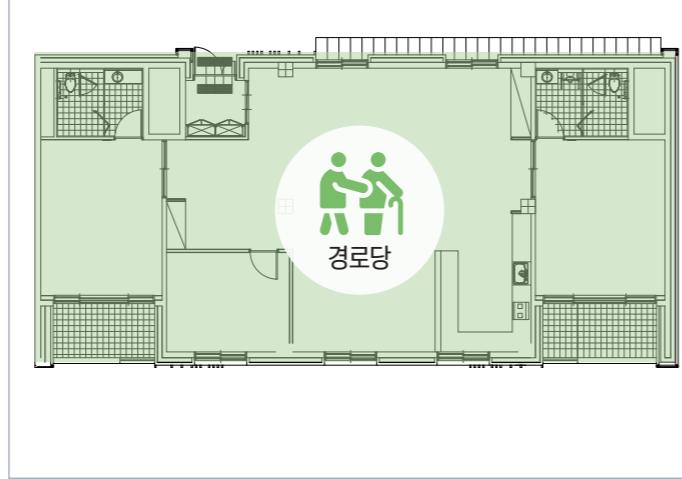
주민공동시설#3



주민공동시설#4



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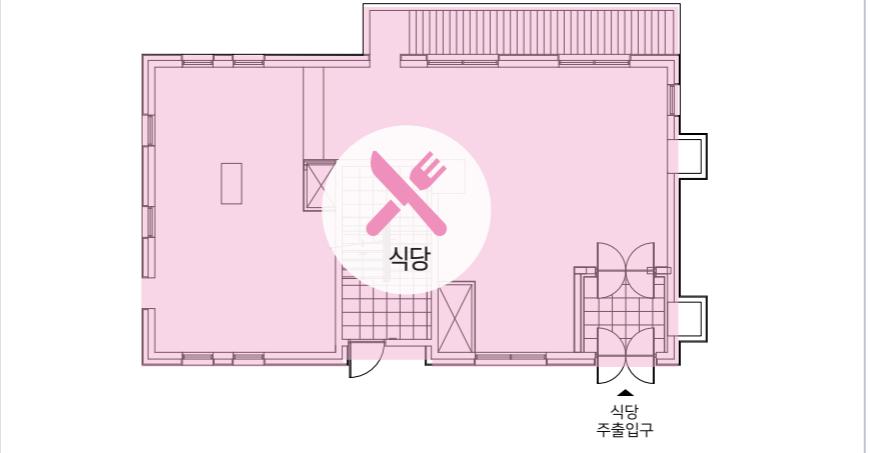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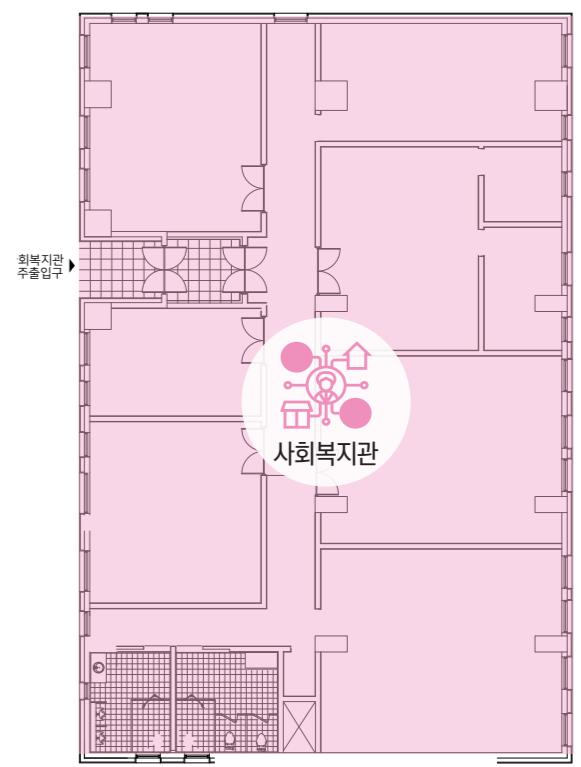
유치원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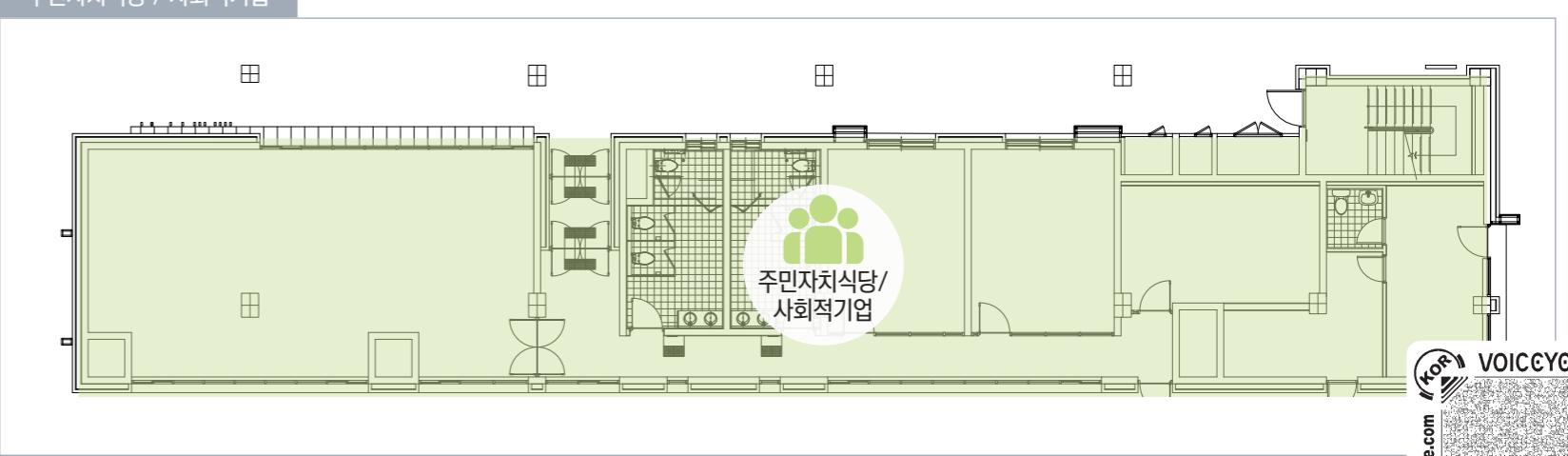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식당 / 사회적기업



※ 상기 평면도는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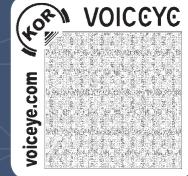
## Options Overview

## 주요 마감재 내역 시설

## 22/27타입 마감재 시설 내역

항목	시설내역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형
	신발장	설치
	현관바닥	자기질타일(400*400)
	현관등	LED 10W
거실	비디오픈	7인치 비디오픈
	거실바닥재	룸카펫(2.0T) 주거약자세대 : 4.5T
	거실등	LED 50W
	거실벽지	실크벽지/발포천정지
주방	싱크대	설치
	개수대	설치
	레인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주방바닥재	룸카펫(2.0T) 주거약자세대 4.5T
	주방타일	도기질타일(400*250)
침실	침실바닥재	룸카펫(2.0T) 주거약자세대 4.5T
	침실벽지	실크벽지/발포천정지
	침실문짝	합성수지위 데코시트
	창호	플라스틱 미서기창
	욕조	미설치
욕실	세면기	원형 도기제
	양변기	투피스형
	욕조수전	미설치
	샤워수전	슬라이드바+일반헤드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발코니	욕실타일	도기질타일(400*250)/자기질타일(200*200)
	발코니섀시	합성수지제 창
	발코니타일	자기질타일(200*200)
	세탁기수전	화초물주기수전겸용
기타/정보통신	세대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위성TV수신 시스템	설치 230동
	정보통신	정보통신1등급
	CCTV시스템	설치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시공여건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08. 07.)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과 8.7일자 공고한 화성시 영구임대주택(화성동탄2 A-6, A77-2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화성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영구임대주택 359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동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공급			
22A	40	22.1800	13.1903	2.4383	16.1227	53.9313	40	-	8	32	227	'21.11 (예정)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22B	74	22.1400	13.1665	2.4339	16.0936	53.8340	74	-	16	58	229,230, 231	
27A	93	27.0600	16.0924	2.9748	19.6700	65.7972	93	-	20	73	227	
27B	80	27.7000	16.4731	3.0451	20.1352	67.3534	80	-	16	64	230,231, 232	
27B-1 (주거약자용)	72	27.7000	16.4731	3.0451	20.1352	67.3534	72	72	-	-	230,231, 232	

\* 화성동탄2 A4-2블록은 영구임대주택(359세대), 국민임대주택(1,031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27B-1형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동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총 등이의 공동면적입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화성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주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임대조건

공급형별	적용구분	기본임대조건(월)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월)	
		임대보증금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2A	「가」군	2,136,000	427,000	1,709,000	42,540	(+)2,000,000 (-)1,000,000	4,136,000 1,136,000
	「나」군	13,648,000	2,720,000	10,928,000	100,120	(+)12,000,000 (-)10,000,000	25,648,000 3,648,000
22B	「가」군	2,132,000	426,000	1,706,000	42,460	(+)2,000,000 (-)1,000,000	4,132,000 1,132,000
	「나」군	13,554,000	2,710,000	10,844,000	99,230	(+)11,000,000 (-)10,000,000	24,554,000 3,554,000
27A	「가」군	2,605,000	521,000	2,084,000	51,900	(+)4,000,000 (-)1,000,000	6,605,000 1,605,000
	「나」군	16,623,000	3,320,000	13,303,000	121,860	(+)14,000,000 (-)12,000,000	30,623,000 5,1860
27B	「가」군	2,667,000	533,000	2,134,000	53,120	(+)4,000,000 (-)1,000,000	6,667,000 1,667,000
	「나」군	16,998,000	3,390,000	13,608,000	124,560	(+)14,000,000 (-)13,000,000	30,998,000 3,998,000
27B-1 (주거약자용)	「가」군	2,667,000	533,000	2,134,000	53,120	(+)4,000,000 (-)1,000,000	6,667,000 1,667,000
	「나」군	16,998,000	3,390,000	13,608,000	124,560	(+)14,000,000 (-)13,000,000	30,998,000 3,998,000

\* 각 단지별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4. 신청자격**”을 참고)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기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 제1호 마목, 바목 및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제2호 가목(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다목, 마목

####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사람

###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온라인계약	현장계약
'20.08.18(화) ~ 08.24(월) (09:00~18:00)	화성시내 거주지 주민센터	2020.11.12(목) (16:00이후) 화성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2020.11.25(수) (10:00~17:00)	11.26(목) ~ 11.27(금) (10:00~16:00)

\* 청약신청은 화성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된 분은 별도안내가 생략됩니다.

####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등록된 사람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 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자용 주택은 주거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b>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b>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제1호 <b>타목</b>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제1호 <b>나목</b> (국가유공자등), <b>마목</b> (북한이탈주민), <b>바목</b> (1순위 장애인), <b>아목</b>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제2호 <b>가목</b>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제1호 <b>차목</b> (일반입주자)								
<b>2. 월평균 소득</b>								
<b>소득</b>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322,574원이하	1,851,603원이하	2,645,147원이하				
	2인가구	2,189,905원이하	3,065,866원이하	4,379,809원이하				
	3인가구	2,813,449원이하	3,938,828원이하	5,626,897원이하				
	4인가구	3,113,171원이하	4,358,439원이하	6,226,342원이하				
	5인가구	3,469,177원이하	4,856,848원이하	6,938,354원이하				
	6인가구	3,797,042원이하	5,315,858원이하	7,594,083원이하				
	7인가구	4,124,906원이하	5,774,868원이하	8,249,812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b>1. 자산기준 적용 신분</b>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b>나목</b> (국가유공자 등), <b>마목</b> (북한이탈주민), <b>바목</b> (1순위 장애인), <b>아목</b> (아동복지시설퇴소자), <b>차목</b> (일반입주자), <b>타목</b> (2순위 장애인)								
<b>2. 총자산 기준</b>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b>20,000만원</b> 이하								
<b>3. 자동차 기준</b>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b>2,468만원</b>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b>추가 관리 됨</b>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b>소득</b>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b>총자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ul> </li> </ul>

구분	산정방법
<b>부동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b>자동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액.</li> <li>• <b>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b>금융자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액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함</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b>총자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b>부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b>자동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액.</li> <li>• <b>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 · 전대자 재임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22A	8	4	4	별도배정 호수 없음
22B	16	8	8	별도배정 호수 없음
27A	20	10	10	별도배정 호수 없음
27B	16	8	8	별도배정 호수 없음

#### ■ 우선공급 대상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b>신혼부부</b> 또는 <b>예비신혼부부</b>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0.08.07) ①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로서 ② <b>신혼부부</b>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b>예비신혼부부</b>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③ <b>무주택세대구성원</b>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사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3점</th><th>2점</th><th>1점</th></tr></thead><tbody><tr><td>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td><td>3명 이상</td><td>2명</td><td>1명</td></tr><tr><td>평택시 연속 거주기간</td><td>3년 이상</td><td>1년 이상 3년 미만</td><td>1년 미만</td></tr><tr><td>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td><td>24회 이상</td><td>12회 이상 24회 미만</td><td>6회 이상 12회 미만</td></tr><tr><td>혼인기간</td><td>3년 이내</td><td>3년 초과 5년 이내</td><td>5년 초과 7년 이내</td></tr></tbody></table>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평택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평택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구 분	3점	2점	1점																					
1.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주택명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 주택관리번호 : 2020000956 ]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 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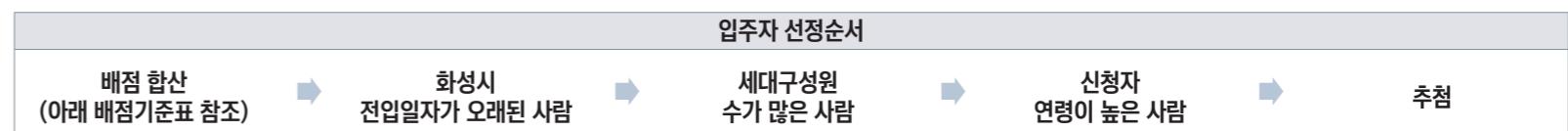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입주자격	임대조건
1순위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다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목.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목.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자목.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차목.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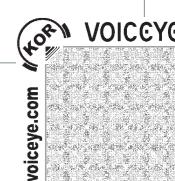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우선공급에 적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 ■ 배점기준표 (일반공급용,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용)

구 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2. 신청자 연령 (25점)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30점)	4. 기타
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10년이상 ~ 15년 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 1년이상 ~ 5년 미만 1년 미만	30 28 26 24 22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40세 미만	25 23 21 19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2. 신청자 연령 (25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30점)	5인 이상 4인 3인 1~2인	30 28 26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공급신청자 포함)



구 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li> <li>•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li> <li>•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li> <li>•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li> <li>•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li> <li>•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li> <li>•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li> </ul> </li> </ul>
	13 (유형 2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li> </ul> </li> </ul>
	11 (유형 1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급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li> <li>•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li> <li>•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li> <li>•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li> <li>•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li> <li>•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li> <li>•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li> </ul> </li> </ul>
7	▶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4	▶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자이어야 함)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li>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li> </ul>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군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li>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li> </ul>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li>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li> </ul>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li> <li>•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li> </ul>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합계	13	
1. 화성시 거주기간 (5점)	10년이상	5
	7년이상~10년미만	4
	5년이상~7년미만	3
	2년이상~5년미만	2
	6개월이상~2년미만	1
2. 공급신청자 나이 (3점)	만75세이상	3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2점)	2인이상	2
	1인	1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8.07.)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예비입주자 증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li> </ul>	별지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li> <li>•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li> </ul>	별지2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ul> </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별지3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ul> </li> </ul>	별지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li> </ul>	별지5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li>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li> <li>•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li> </ul>	
※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공통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임신진단(확인)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별지6-1호 서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별지6-2호 서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배점관련 서류)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감정원

##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0.11.12.(목) 16:00 이후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http://www.hscity.go.kr))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총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0.11.25.(수) 10:00 ~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베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0.11.26.(목)~11.27.(금)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장소 : [한국도지주택공사 화성권주거복지지사](#)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스타플라자 4층]
- 계약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계약자 신분증지침</li> </ul> <p>※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단, 위조방지 훌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배우자</b>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li> <li><b>배우자 외의 자</b>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li> <li><b>(자필서명방식)</b>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li> </ul>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이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b>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자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b></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사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한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사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학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li>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li> </ul>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ul>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입주대상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 주방환기용)가 균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내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 또는 경사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시공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단지출입구,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도로는 고저차 및 단지여건상 도로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총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주차대수는 총 1,343대입니다.(아파트 : 1,335대, 상가 : 4대, 유치원 : 4대)</li> <li>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li> <li>전기실 및 발전기실 균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지하에는 우수저류조,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각 동 및 지하주차장 등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덮개가 없으며, 트렌치 내부는 구배가 없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환기율을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훈름이 설치되며, 훈름 상부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균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참조)</li> <li>배수펌프가 아파트 PIT층에 설치되고 제연설비의 제연판 및 외기 취입구가 PIT층 및 옥상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229동, 234동 및 각 동 일부 계단실 제외)</li> <li>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우수유입 및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경형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전기차 주차장이 혼합배치되어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li> <li>어린이집 등 단지 내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225동(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식당, 경비실), 227동(주민공동시설), 229동(유치원), 230동(어린이집), 231동, 232동(사회복지관), 234동(경비실)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인접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보관함)가 설치되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접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225동 생활자원보관소는 필로티 하부(경로당 옆)에 한 개소가 있으나 배치도에서 224~524호에 의해 가려져서 표기할 수 없으므로 동호배치도에서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225동(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자치식당), 229동(유치원), 230동(어린이집), 231동, 232동(사회복지관 주방/식당)의 주방배기는 당해층으로 배출되어 냄새가 인접세대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경로당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에 내부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재활용품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각종 주민시설은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내 각종 시설물(생활자원보관소, 환기창, 채광창 등) 및 마감재(벽체마감, 옥탑장식물, 물당)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에서의 소음 발생에 따라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li> <li>인접 상业시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균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 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승강기는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설치됩니다.</li> <li>동별 승강기 설치 인증,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출입구와 면하는 교차로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225동~226동 인근)는 신호등을 운영하며, 삼거리 교차로(233동~234동 인근)는 무신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li> <li>공공보행통로(225, 228, 229, 230동 사이)는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유사시에 소방차전입용도로 사용됩니다.</li> <li>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li> <li>단지 내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li> <li>무인택배보관함은 225동 경비실 옆 택배보관실, 225동 관리사무소 옆, 227동 출입구 인근, 234동 경비실 옆 무인택배실에 설치됩니다.</li> <li>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 및 단지 출입구 인접세대(225, 226, 233, 234동)는 차량 출입 시 바닥소음, 차량 차단기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각 동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226, 228, 229, 234동은 제외 됩니다.</li> </ul>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li> </ul> </li> <li>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0년의 경우 2,46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ul>		
■ 단지 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지구 내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교량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공공청사 설립 계획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주변 아파트 단지 공사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외부인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 등 행정관련 기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동탄JC 인근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지구 남서쪽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원청)이 존치 예정입니다.</li> <li>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 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화기 및 노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지구 및 단지여건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부여건</li> <li>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1,031호) 및 영구임대(359호)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입니다.(총 1,390세대)</li> <li>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예외 : 국민임대 46B는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li> <li>건물의 외관, 조경계획,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문양 및 색상,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본인 등·호수지정시 동일평형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복층세대 및 저층동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명칭·동표지·아파트 문양·B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내 보안등, 가로등의 설치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1~3층 등 저층부 세대는 복도 샤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수 유입 및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자전거 보관대가 필로티 밑 또는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일부 동의 1층 일부는 필로티로 시공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231동, 사회복지관)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 시공됩니다.</li> <li>CCTV는 관련법령에 따라 단지출입구, 놀이터, 동 주현관, 동 옥상출입구, 승강기 내부,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li> <li>일부 옥상에 자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230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이 적용되는 단지입니다.</li> <li>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며, 230, 231, 235, 23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관련기관(KT, SKT, LGU+) 협의 후 전파강도측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외부복도 난간 및 옥상난간은 외부 강풍시 울림으로 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동연결 복도 및 데크는 지붕이 시공되지 않으며 우기, 동절기 우수유입으로 인한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벽체 및 천장, 주동 외부벽체 등은 구조적 연결로 인한 EJ(Expansion Joint)가 시공되며, 해당부위의 마감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며, 230, 231, 235, 23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관련기관(KT, SKT, LGU+) 협의 후 전파강도측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외부복도 난간 및 옥상난간은 외부 강풍시 울림으로 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동연결 복도 및 데크는 지붕이 시공되지 않으며 우기, 동절기 우수유입으로 인한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벽체 및 천장, 주동 외부벽체 등은 구조적 연결로 인한 EJ(Expansion Joint)가 시공되며, 해당부위의 마감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li> </ul> <p><b>■ 마감재 및 밸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3~18층 규모입니다.</li> <li>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총, 측벽, 입면(전 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밸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별밸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다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경우 폭, 높이, 전기용량 및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및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세대의 멀리베이터 훌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li> <li>평면도 상의 차수는 중심선 기준(밸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li> <li>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복도,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부가구(주방가구, 신발장, 욕실장, 책상 등) 설치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의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li> <li>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li> <li>에어컨 배관구는 전 탑입 거실 상, 하부/ 밸코니 하부에 각 1개소씩 설치됩니다.</li> <li>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밸코니 난간 외부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밸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li> <li>욕실은 조립식욕실(UBR)로서 충격에 취약하므로 사용 시 충격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li> <li>욕실에 AD/PD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실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li> <li>밸코니는 단열재가 설치되고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되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밸코니창호 손잡이는 잠금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설치됩니다.</li> <li>일부 밸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홀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어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통기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li> <li>밸코니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일부세대 밸코니 세탁기 위치 상부에 세대환경시스템 장비가 설치 예정입니다.(국민임대 46B는 1층 화장실 천정)</li> <li>밸코니 조명기구는 전용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국민임대 46B 제외)</li> <li>밸코니 선반은 접이식 선반이 설치되어 과도한 중량을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밸코니 전기콘센트는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과 환기 유니트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국민임대 46B 제외)</li> <li>모든 세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밸코니에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며, 부수고 탈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조명기구는 LED램프가 적용됩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TV수구, 인터넷수구 등의 배선기구 위치는 변경이 불가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맞은편에 매입 설치됩니다.</li> </ul> <p><b>■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 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초등학생은 '18.9 개교한 다원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중학생은 동탄중, 청계중, 다원중, 한백중, 이산중 등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한백고, 동탄중학교, 이산고, 청의고(구 신리고), 정현고, 서연고]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합니다.</li> <li>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협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정일(입주자자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ul>

##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전용부분	★
공용부분	★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에너지 성능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 및 유출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자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료율	★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지붕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지역난방)

\* 적용/미적용 여부 표기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화성동탄2 A4-2BL	한국토지주택공사	<b>건축, 토목, 기계, 조경</b> 신동아건설 금호산업(주) <b>전기, 통신</b> (주)현대에너지 주식회사 이에이티크놀로지 주식회사 유텔	-	(주)신화 F.E.ONE

###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파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sup>2</sup>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sup>2</sup>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를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기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활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하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증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증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사업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아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 자산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 지원금은 제외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선박·항공기	선 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아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5

##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li> <li>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li> </ul>
리플렛 배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li> <li>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li> </ul>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